

[일련번호 : 3]

양 천 구 주 의 요 구

제 목 자치회관 지출증빙 미흡 및 예산집행기준 미준수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동은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어, 이에 따라 모든 회계서류는 입증책임이 있어 구매할 물품에 대한 지급 내역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.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각 과장은 같은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, 검수조사 등을 작성하고, 물품납무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또한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83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·수리·수선 등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수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및 「양천구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

따르면 세출예산은 성질별 분류에 따라 편성·집행하여야 하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 47조는 세출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.

아울러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 3 <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>에 따르면, 행사운영비(201-03)는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, 시설·장비·물품 임차료, 강사료 등 운영 목적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, 행사실비지원금(301-11)은 교육, 세미나, 회의, 공청회 참석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·교통비 등 실비, 발표자의 사례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동은 자치회관 수강생용 데스크톱 구입 외 2건, 총 5,584,720원을 지출하면서 물품검수조서, 참석자 명단 등 지출증빙서류를 누락하여 그 증빙을 소홀히 하였고 그 중 그린마켓 행사 참여자 및 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를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자치회관 지출 부적정 내역

연번	지출일시	건명	금액(원)	지적사항
1	2023.10.30.	**** 관련 참여자 및 봉사자 점심 지출(김밥)	300,000	- 행사운영비로 지출 (참가자 등 명단 없음) (적정과목 : 행사실비지원금)
2	2023.12.05.	자치회관 수강생용 데스크톱 구입비 지출	1,837,260	- 물품검수조서 미첨부
3	2024.12.04.	**** 반찬배달 재료 구매비용	3,447,460	- 물품검수조서 미첨부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동은 김장 관련 배추, 고춧가루 등은 물품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물품검수조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, 대신 포장된 김장김치 100박스 사진을 관련자료로 문서에 첨부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그러나 배추·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 또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와

「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상 구의 예산으로 집행한 ‘물품(완제품 뿐 아닌 사용 소비를 전제로 구입한 원재료)’에 해당하므로 검수조서 작성 대상이며, 포장된 김장 김치 사진은 완성품 확인 자료일 뿐 물품 수령·검수를 증명하는 법적 서류(물품검수조서 서식)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자치회관 예산 및 기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